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이 법인은 국가와 세계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진리.평화.창조’의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952.12.30. 창립자 김흥배 박사의 출연에 의해 설립되었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2.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개정 2009.4.27, 2014.1.24)
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대학교”) (개정 2008.11.26)

제3조의 2 (삭제) (개정 2008.2.26, 2008.11.26)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번지에 둔다.(개정 2016.10.26.)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07.12.5, 2008.7.11., 2014.6.13)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2.5)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7.11)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

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7.11)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 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 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13조 내지 제17조 (삭 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 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개정일 2022.12.30.)
2. 감사 2인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 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개정 2008.7.11)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한다.(개정 2008.7.11)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7.11)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개정일 2022.12.30.)

제24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5)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5)

④(삭제 2007.12.5)

제24조의 5 (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대학교의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개정 2007.12.5)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5)

1.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7.12.5)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2.5)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 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 구성되어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감사의 추천에 대하여는 제24조의 4를 준용한다.(개정 2007.12.5)

⑦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7.14.)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7.14.)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7.14.)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8.7.11.)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7.11., 2021.02.09.)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12.5.)

제26조의 2 (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상임이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

고하는 일(개정 2008.7.11)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 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학교법인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26.)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의 2 (자문위원회) ①법인 및 학교, 부설기관의 건설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건설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9.6.25.)

②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6.25.)

제32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7.12.5)

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2.5)

제33조 (이사회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이사회회의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7.11.)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7.14.)

제35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5., 2021.7.23.)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2.5)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한다.

1.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개정 2016.06.28.)
2. 농·축산업
3. 임산업
4. 교육사업
5. 학원운영업
6. 교육기자재 개발업
7. 출판사업
8. 컨설팅 및 직업소개업
9. 인터넷 쇼핑물
10.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11. 외국어평가, 인증 및 검정사업
12. 캠프사업(신설 2013.05.20)
13. 건물종합관리용역업(개정 2013.05.20.)
14. 프랜차이즈 및 투자사업(신설 2016.06.28)
15. 위 제1호 내지 제14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개정 2013.5.20, 2016.06.28)

제37조 (수익사업체의 명칭) ①제36조의 사업 중 제1호는 본 법인이 직접 경영한다.

②제2호 및 제3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이지피에스를 경영한다.(개정 2019.11.29.)

③제4호 내지 제12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외대어학연구소를 경영한다.(개정 2013.5.20)

④제13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이지피에스와 동원안전시스템주식회사를 경영한다.(개정 2013.5.20., 2019.10.17., 2019.11.29.)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주식회사이지피에스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412, 동원안전시스템주식회사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2길 21에 두고, 주식회사외대어학연구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96-1에 둔다.(개정 2007.12.05, 2013.5.20., 2016.06.28., 2019.10.17., 2019.11.29., 2022.12.30.)

제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7.11)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과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8.7.11)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10.13)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43조 (임용) ①“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신설 2016.10.26. 개정 2022.7.14.)

②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7.12.5., 2008.11.26., 2016.10.26.)

③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의 경우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07.12.5., 2016.10.26.)

④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한다. 단,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강사와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등(이하 ‘겸임교수 등’ 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고 임용절차, 근무조건, 신분보장 등은 학칙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다.(개정 2008.11.26., 2016.10.26., 2016.10.26., 2019.07.12.)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및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2.08.29)

2. 급여 :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 강의시간, 소속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삭 제) (개정 2019.07.12.)

⑥제3항의 계약조건은 본인과 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7.11., 2016.10.26.)

⑦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사이버대학교의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08.11.26., 2016.10.26.)

⑧(삭 제)

⑨(삭 제)

⑩(삭 제)

⑪학교의 조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이 임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6.10.26.)

⑫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7.11., 2016.10.26.)

제43조의 2 (기간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은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5.05.19., 개정 2016.10.26.)

제43조의 3 (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①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12.5., 2016.10.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며,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04.0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6.10.26.)
8.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6.10.26.)
9.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개정 2008.7.11., 2016.10.26.)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개정 2016.10.26.)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6.10.26.)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개정 2016.10.26.)
13. 기타 임용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신설 2016.10.26.)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단,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18.04.03.)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6.10.26., 2021.02.09.)
7.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04.03.)
8.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6.10.26.)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8.04.03.)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7.11., 2021.02.09.)

③교원이 근무기간 중 휴직하였을 때는 이를 재직년수에서 제외한다. 단, 제44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휴직교원의 처우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한다.(신설 2018.04.03. 개정 2019.01.22., 2021.02.09.)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5.26)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10.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6.10.26.)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6.10.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6.10.26.)

제48조의 2 (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10.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6.)

③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10.26.)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06.13.)

④강사 및 겸임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 제2호 각목에 따른다.(개정 2019.07.12.)

제50조의 2 (명예퇴직) ①본 법인 설치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5.15.)

제50조의 3 (정년) 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11.26)

②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12.18)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 제청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의에 관

한 사항(개정 2012.08.29., 2016.10.26.)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강사 및 겸임교수 등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9.07.12.)

②사이버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1.26)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 제청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29., 2016.10.26.)
2. 총장이 학장 등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26.)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의 부총장, 교무처장, 각 대학의 학장 그리고 총장이 지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인으로 조직한다.(개정 2015.05.19.)

②사이버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인으로 조직한다.(개정 2008.11.26)

③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고등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④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양 캠퍼스 부총장이 공동으로 하되, 각 캠퍼스의 인사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각 캠퍼스 부총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4.06.13)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캠퍼스의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6.13)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7.14.)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0.26., 2022.7.14.)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한정한다.)(신설 2022.7.14.)
 -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2.7.14.)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10.26.)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22.7.14.)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7.14.)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10.26.)

⑤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10.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0조 (삭 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 의결의 제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제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10.26.)

제65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찰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6.10.26., 2022.7.14.)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10.26.)

④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7.14.)

⑥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7.14.)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6.10.26. 2020.05.12.)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개정 2016.10.26.)

제68조 (운영세칙) ①교원징계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시행령을 준용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 4 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각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삭 제) (신설 2015.05.19. 개정 2015.09.24)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의 2 (명예퇴직) ①본 법인 직원과 설치학교의 일반직원 및 기능직원으로서 15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04.27., 2019.05.15.)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89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이와 별도로 재무 및 사업을 담당하는 처장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6.06.28., 2022.12.30.)
- ②법인사무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6.06.28., 개정 2022.12.30.)
- ③법인사무처에는 사무팀, 재무팀, 사업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6.06.28.)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06.28., 2022.12.30.)
- ⑤법인 직원의 임용 및 복무, 보수 등은 따로 규정으로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8.02.21.)

제 2 절 대 학 교

- 제90조 (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대학교에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재무·대외부총장, 산학연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개정 2015.05.19. 2019.01.22.)
- ④양 캠퍼스 부총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서울캠퍼스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재무·대외부총장, 산학연계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05.19. 2019.01.22.)
- ⑤재무·대외부총장은 재무, 국제교류, 발전기금 모금 등 재정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9.01.22.)
- ⑥산학연계부총장은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사업, 학생창업, 학교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23.4.28.)
- 제 91 조 (학장, 대학원장 등)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8.3.1, 2009.4.29, 2010.4.16)
- ②학장,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개정 2008.3.1, 2009.4.29, 2010.4.16)
- ③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8.3.1, 2009.4.29, 2010.4.16)
- ④학장의 업무보조 및 학생지도를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 ⑤전문대학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08.9.19.)
- ⑥교육대학원장과 경영대학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5.03.20.)
- 제92조 (하부조직) ①대학교 양 캠퍼스에 교무처,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행정지원처를 두고 서울캠퍼스에 기획조정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정보지원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인권센터 및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하며, 재정위원회는 재무·대외부총장 산하에 둔다.(개정 2010.04.16, 2012.12.21., 2014.2.19., 2014.06.13., 2015.09.24., 2015.12.23., 2016.01.14.,

2017.07.26., 2018.02.21., 2018.05.09., 2019.05.15., 2020.11.27., 2021.02.09., 2021.7.23., 2022.7.14., 2023.4.28.)

②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국제교류처장, 정보지원처장, 교육혁신원장,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지원처장과 기획조정처장, 대외협력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국책사업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부처장, 입학부처장, 행정지원부처장, 대외협력부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0.04.16, 2012.05.16, 2012.12.21, 2014.06.13, 2014.08.27, 2015.09.24., 2015.12.23., 2016.01.14., 2016.04.11., 2018.02.21., 2019.05.15., 2020.11.27., 2021.02.09., 2021.7.23., 2023.4.28.)

③(삭 제)

④기타 본부기관으로 비서실, 홍보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AI교육원을 둔다. 비서실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하고, 홍보실장,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AI교육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4.8.27., 2018.04.03., 2019.11.29. 2020.09.03.)

⑤(삭제)(신설 2018.04.03., 개정 2020.11.27.))

⑥서울캠퍼스 행정지원처에는 총괄지원팀, 인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건설기획팀을 두고, 글로벌캠퍼스 행정지원처에는 총괄지원팀, 시설관리팀, 안전보건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9.1.20., 2015.05.19., 2018.04.03., 2022.05.26., 2023.4.28.)

⑦(삭 제) (개정 2018.04.03.)

⑧서울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외국어교육센터를 둔다. 입학처에 입학팀을 두고,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외국어교육센터를 둔다. 외국어교육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8.06.20, 2008.08.28, 2012.05.16., 2014.08.27., 2015.05.19., 2015.12.23., 2018.04.03., 2019.05.15., 2021.02.09., 2024.02.07., 2024.03.28.)

⑨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는 학생지원팀, 장학팀, 학생상담센터, 진로취업지원센터, 공공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는 학생지원·장학팀, 학생상담센터, 진로취업지원센터, 공공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학생상담센터, 진로취업지원센터, 공공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학생지원팀, 장학팀, 학생지원·장학팀,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학생지원팀, 장학팀, 학생지원·장학팀, 진로취업지원센터, 공공인재개발원운영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과장 이상으로 보하는 팀장을 둔다.(개정 2007.12.05, 2011.07.13, 2012.05.16, 2012.08.29., 2015.09.24, 2017.01.25, 2018.02.21, 2018.04.03, 2019.01.22., 2020.11.27., 2021.07.23., 2022.05.26.)

⑩기획조정처에는 국책사업통합추진단, 전략기획팀, 예산조정팀, 평가감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8.04.03., 2021.02.09.)

⑪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팀, 국제입학관리팀,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를 두고 대외협력처에는 발전협력팀을 두며 국제교류팀, 국제입학관리팀, 발전협력팀의 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되 산하에 과장 이상의 팀장을 둔다.(개정 2010.4.16, 2012.5.16, 2012.12.21., 2014.06.13., 2016.01.14., 2018.04.03. 2019.01.22.)

⑫정보지원처에는 IT개발팀, IT인프라팀, 정보통신팀, 디지털서비스팀을 두고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2.12.21., 2018.04.03.)

⑬(삭 제) (개정 2010.4.16., 2015.12.23., 2018.04.03.)

⑭홍보실에는 전략홍보팀을 두고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8.04.03.)

⑮(삭 제) (신설 2014.8.27. 개정 2018.04.03.)

⑩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운영팀을 두고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8.04.03.)

⑪AI교육원에는 AI교육원운영팀, SW기초교육센터를 둔다. AI교육원운영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하고, SW기초교육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9.11.29. 개정 2020.04.14.)

⑫지식출판콘텐츠원에는 지식출판콘텐츠팀을 두고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20.11.27.)

⑬교육혁신원에는 혁신지원팀, IR센터, 전공설계지원센터, 교육지원팀,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IR센터장, 전공설계지원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혁신지원팀장과 교육지원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21.02.09., 개정 2024.02.07.)

⑭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에는 HUFs지역협력비즈니스센터를 두고, 과장 이상으로 보하는 팀장을 둔다.(신설 2023.4.28.)

⑮제1항 내지 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4.8.27., 2018.04.03., 2019.11.29., 2020.11.27., 2021.02.09. 2023.4.28.)

제92조의 2 (연구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연구산학협력단장 및 양 캠퍼스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③연구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연구산학협력단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92조의 3 (글로벌창업지원단) ①대학교에 글로벌창업지원단을 두고 산하에 창업지원운영팀, 창업인재양성센터, 학생창업보육센터를 둔다.(신설 2023.4.28.)

②글로벌창업지원단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창업지원운영팀, 창업인재양성센터, 학생창업보육센터에는 과장 이상으로 보하는 팀장을 둔다.(신설 2023.4.28.)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 교학과 기능을 통합하여 양캠퍼스 교무처에 학사종합지원센터를 두며, 대학원에는 교학처를 두어 각 대학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개정 2007.12.5., 2008.9.19)

②대학원 교학처에 각 대학원의 교학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학원사무1팀과 대학원사무2팀을 둔다.(개정 2007.12.5, 2008.3.1, 2008.9.19)

③(삭 제) (개정 2008.9.19)

④대학원의 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대학원사무1팀장과 대학원사무2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3조의 2 (법학전문대학원의 하부조직) 법학전문대학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8.9.19)

제94조(부속기관) ①대학교의 서울캠퍼스에 도서관, 외대교육방송국, 외대신문사, 국제학사 GlobbeeDorm, Global Hall, 예비군연대를, 글로벌캠퍼스에는 도서관, 외대교육방송국, 세계민속박물관, HUFs Dorm, 예비군연대를 둔다.(개정 2008.03.1, 2008.03.21, 2012.08.29., 2012.11.29., 2015.05.19. 2019.05.15.)

②부속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도서관장, 세계민속박물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단, 예비군연대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3.21, 2008.9.19, 2012.11.29)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9.19)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의 2 (부속연구기관) ①(삭 제)

②대학교에 외국어문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문분야연구센터, 융합연구센터를 두고 산하에 기능별

로 연구소 또는 사업단을 둔다.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연구소, 사업단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8.9.19., 2015.1.21., 2015.04.22.)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개정 2008.9.19.)

⑥(삭 제) (개정 2008.6.20., 2008.9.19., 2015.04.22.)

제94조의 3 (부속교육기관) ①대학교에 사업본부, 사업지원처를 두고 본부장과 처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4.1.24)

②사업본부 산하에 외국어연수평가원(서울평생교육원), 국제사회교육원(글로벌평생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각 기관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업본부에 사업지원처 사업지원팀(재무파트 배속), 사업본부운영1팀, 사업본부운영2팀, 사업본부운영3팀을 둔다.(개정 2008.3.1, 2009.4.29, 2010.4.16, 2010.6.16, 2013.12.20, 2014.1.24., 2014.8.27. 2018.04.03., 2020.11.27.)

③외국어연수평가원(서울평생교육원) 산하에 외국어연수평가원, 통번역센터, FLEX센터, 서울 평생교육원, 한국어문화교육원, TESOL전문교육원을 두고 원장과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각 산하기관에는 원장 및 센터장을 보좌하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0.4.16, 2014.8.27.)

④국제사회교육원(글로벌평생교육원) 산하에 국제사회교육원, 영재교육원을 두고 국제사회교육원장은 부교수 이상, 영재교육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국제사회교육원에는 원장을 보좌하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8.3.1, 2008.9.19, 2009.4.29, 2010.4.16, 2014.8.27., 2017.01.25.)

⑤(삭 제) (신설 2010.4.16, 개정 2014.8.27.)

⑥(삭 제) (개정 2010.4.16, 2014.8.27)

⑦(삭 제) (신설 2010.4.16, 개정 2014.8.27)

⑧(삭 제) (개정 2010.4.16, 2014.8.27)

⑨(삭 제) (개정 2010.4.16, 2014.8.27)

⑩(삭 제) (신설 2010.4.16, 개정 2014.8.27)

⑪(삭 제) (신설 2010.6.16, 개정 2014.8.27)

⑫(삭 제) (신설 2013.12.20, 개정 2014.8.27)

⑬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0.4.16, 개정 2010.6.16, 2013.12.20)

⑭사업본부 산하 팀장 또는 파트장은 과장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0.4.16, 개정 2010.6.16, 2013.12.20, 2014.1.24, 2014.8.27)

⑮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4.16., 개정 2010.6.16, 2013.12.20)

제94조의 4 (부설기관) 대학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2010.4.16)

제94조의 5 (기타기관) 대학교에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2011.4.22)

제95조 (도서관) ①서울캠퍼스 및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에 학술정보팀을 두고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5.0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사이버대학교(개정 2008.2.26, 2008.11.26)

제96조 (총장 등) ①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개정 2008.2.26, 2008.11.26)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08.2.26, 2008.11.26)

③사이버대학교에는 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8.2.26, 2008.11.26., 2014.06.13., 2018.01.31.)

④학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6.13., 2018.01.31.)

96조의 2(대학원) ①사이버대학교의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1.11.29)

②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신설 2011.11.29)

③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부서에 팀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1.11.29)

④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신설 2011.11.29)

⑤제3항 및 4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1.11.29)

제97조 (하부조직) ①사이버대학교에는 교학처, 입학처, 교육혁신처, 기획처를 둔다.(개정 2008.2.26, 2008.11.26., 2014.6.13., 2015.11.06. 2019.07.12. 2022.04.12.)

②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팀장을 둘 수 있고,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대우 이상의 직원, 팀장은 대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09.19., 2022.11.01.)

③총장 직속기관으로 비서팀을 두며, 팀장은 대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11.01.)

④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2.11.01.)

제97조의 2 (산학협력단) ①사이버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20.07.07.)

②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98조 (부속기관) ①사이버대학교에는 평생교육원, 글로벌교육원을 둔다.(개정 2008.2.26., 2008.11.26., 2014.6.13., 2020.02.04., 2020.07.07., 2022.04.12., 2022.11.01.)

②부속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대우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4.6.13., 2018.09.19.)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6.13., 2018.01.31., 2022.11.01.)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대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4.06.13., 2018.09.19., 2020.02.04.)

제98조의 2 (보직의 직급기준에 대한 예외) 제97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보할 수 있다.

제98조의 3 (삭제) (신설 2011.8.19., 개정2018.01.31., 2020.02.04.)

제98조의 4 (삭제) (신설 2014.6.13. 개정 2016.10.26., 2020.02.04.)

제98조의 5 (부설기관) ①사이버대학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2014.6.13.)

②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4.6.13.)

제 4 절 고등학교

제99조 (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1.3.8)

제100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0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한다.(개정 2007.12.5)

1.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9.01.22.)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신설 2019.01.22.)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13.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으로 개방이사 및 감사를 추천한다.

제103조 (위원의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0.04.14.)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

리가 비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01.22.)

⑥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⑦제6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1.22.)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5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01.22.)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6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9.01.22.)

3.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제106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신설 2019.01.22.)

6.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신설 2019.01.22.)

②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 2019.01.22.)

제108조 (시행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2008.7.11)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1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에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3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4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등의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6조 (회의 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8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9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0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절 정 원

제122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3>, <별지 4>와 같다.

제 8 절 대학평의위원회(개정 2008.11.26)

제123조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 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8.11.26)

제124조 (평의위원회의 구성) ①대학교의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26)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②사이버대학교의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26)

1. 교원 5명
2. 직원 1명
3. 학생 1명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명

③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1.26)

제125조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학교의 장이 각 단위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8.11.26)

제126조 (평의위원회 의장 등) (개정 2008.11.26)

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27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1.26., 2019.01.22.)

제12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2.5, 2008.11.2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9조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1.26)

제 8 장 보 칙

제13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동아일보에 공고한다.

제13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31조의 2 (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4.12., 개정 2022.7.14.)

제131조의 3 (사학기관 행동강령)①제131조의2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7.14.)

②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일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2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이 사	김 흥 배	종 신
동	김 병 조	임기 2년
동	김 덕 배	임기 4년
동	김 진 용	임기 2년
동	백 창 제	임기 2년
동	학 장	재임중 임기
동	결 원	임기 2년
동	결 원	임기 4년
동	결 원	임기 2년

부 칙

- (1) 이 정관은 196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0.3 - 164 제정)
- (2) 이 정관은 196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문고대 1042.32 - 1475 개정)
- (3) 이 정관은 197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2 - 725 개정)
- (4)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0 - 1283 개정)
- (5) 이 정관은 197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0 - 1467 개정)
- (6)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0 - 1616 개정)
- (7) 이 정관은 197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0 - 854 개정)
- (8) 이 정관은 198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2.3 - 147 개정)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총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총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5) (대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학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6)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7)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198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2.3 - 1718 개정)
- (2) 이 정관은 198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2.3 - 2489 개정)
- (3) 이 정관은 198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2.3 - 1302 개정)
- (4) 이 정관은 198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2.3 - 1671 개정)
- (5) 이 정관은 198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대학 1042.3 - 2024 개정)
- (6) 이 정관은 198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대학 25422 - 1150 개정)
- (7) 이 정관은 198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대학 25422 - 974 개정)

- (8) 이 정관은 199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대학 25422 - 301 개정)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대학 25422 - 614 개정)
- (2)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이 정관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대학 25422 - 2192 개정)
- (2) 이 정관은 199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대학 81422 - 2280 개정)
- (3) 이 정관은 199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대학 81422 - 788 개정)
- (4) 이 정관은 199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대행 81422 - 2510 개정)
- (5) 이 정관은 199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대행 81422 - 325 개정)
- (6) 이 정관은 199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대행 81422 - 1420 개정)
- (7) 이 정관은 199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대학 81422 - 922 개정)
- (8)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대학 81422 - 1242 개정)
- (9)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대학 81422 - 1535 개정)

부 칙

- (1)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대학 81422 - 1442 개정)

부 칙

- (1) 이 정관은 2000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대행 81422 - 97 개정)
- (2) (교원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43조(임면) 제2항 제1호 교원 임용기간을 정년으로 변경 시행할 당시 설치학교에서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이 정관은 200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대행 81422 - 703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대행 81422 - 1138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대행 81422 - 1679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1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대행 81422 - 37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대재 81422 - 654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대재 81422 - 1360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대재 81422 - 48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사학 81422 - 1627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4년 3월 16일부터 개정한다.(사학지원과 - 198호 개정)

(2)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9인 중 4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여 선임한 3인 중 2인과 이사회가 지명하여 선임한 이사 3인 중 2인을 임기 2년의 이사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이사회가 각기 정하는 자로 한다.

(3) 이 부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그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에 교수협의회가 학교 발전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 후원을 할 인사로 인정한 자 2인까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제3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이사 2인을 교체함으로써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사학지원과 - 793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사학지원과 - 5511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466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919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6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3054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6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5575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2283호 개정)
(2)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3478호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5488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963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대학경영지원과 - 1152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대학경영지원과 - 2072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대학경영지원과 - 3684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대학경영지원과 - 4433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대학경영지원과 - 4812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대학경영지원과 - 1924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 - 1031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제도과 - 260호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호 및 별지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4조의 3 제4항의 i-외대 폐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4항, 제50조 4항 및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6.06.28.)

구 분		정원(명)
일반직	2급(부장)	2
	3급(부장대우)	2
	4급(차장)	2
	5급(과장)	2
	6급(대리)	2
	7급(대리)	2
	8급(담당)	2
	9급(담당)	2
소 계		16
기술직	4급(차장)	-
	5급(과장)	-
	6급(대리)	-
	7급(대리)	-
	8급(담당)	-
	9급(담당)	-
소 계		-
기능직	6등급	1
	7등급	1
	8등급	2
	9등급	2
	10등급	-
소 계		6
총 계		22

<별지 2>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2.02.16.)

구 분		정원(명)
일반직	2급(부장)	5
	3급(부장대우)	12
	4급(차장)	34
	5급(과장)	55
	6급(대리)	60
	7급(대리)	32
	8급(담당)	56
	9급(담당)	4
소 계		258
기술직	2급(부장)	2
	3급(부장대우)	3
	4급(차장)	18
	5급(과장)	27
	6급(대리)	30
	7급(대리)	10
	8급(담당)	10
	9급(담당)	2
소 계		102
기능직	6등급	7
	7등급	8
	8등급	9
	9등급	14
	10등급	0
소 계		38
합 계		398

<별지 3>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7.01.25.)

구 분			정 원 (명)
일 반 직	행정	5급 (부참사)	1
		6급 (주 사)	1
		7급 (부주사)	1
		8급 (서 기)	2
		9급 (부서기)	2
	소 계		7
	기술	7급	1
		8급	2
		9급	3
	소 계		6
	총 계		13

※ 행정 5급, 6급은 학교 여건에 따라 통합 정원 운영

<별지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8.09.19.)

구분		정원
일반직 기술직	2급(부장)	1
	3급(부장대우)	1
	4급(차장)	7
	5급(과장)	12
	6급(대리)	10
	7급(대리)	5
	8급(담당)	8
	9급(담당)	1
총계		45